

# 캘리포니아 법이 귀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한 가구의 일원이자  
임차인으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인신매매, 노인 학대 또는  
의존상태 성인 학대의 피해자이고,  
사는 곳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  
떠나고자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이 귀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한 가구의 일원이란 임차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가족  
모두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귀하,  
즉 임차인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 HERA

HERA  
주택 및 경제적 권리 옹호단체

## 연락처:

(510) 271-8443 내선번호. 300

[inquiries@heraca.org](mailto:inquiries@heraca.org)

[www.heraca.org](http://www.heraca.org)

P.O. Box 29435

Oakland, CA 94604



본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여성  
및 소녀 지위 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and Girls)의 협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귀하는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노인 학대,  
또는 의존상태 성인 학대의  
피해자입니까?

귀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귀하는 임대인에게  
14 일전 통지만으로 위약금  
없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합법적 파기

위약금 없이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려면, 귀하는 임대인에게 반드시 아래를 고지해야 합니다:

- 1) 귀하/가족 구성원이 피해자이며
- 2)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자 함

임대인에게 하는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범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며 다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1) 귀하 및/또는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임시 접근금지명령, 비상 보호 명령 또는 기타 보호 명령 사본 및 또는



2) 귀하 및/또는 가족 구성원이 위에 나열된 6가지 범죄 중 하나의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경찰 보고서 사본 및(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노인 학대나 의존상태 성인 학대) 또는

3) 귀하 및/또는 가족 구성원이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노인 학대, 의존상태 성인 학대 등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해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공인된 제3 자의 서명이 기재된 문서 또는

4) 3번에 열거된 범죄 중 하나를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문서

\* 공인된 제 3 자란 의사, 등록 간호사(RN), 정신과 전문의, 혹은 심리학자와 같은 의료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정식 면허가 있는 사회복지사 및 결혼/가족 치료사 또한 공인된 제 3 자로 간주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행 상담사도 이에 해당됩니다.

## 그밖의 중요정보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14일(임대차계약/동의서의 잔여일이 14 일 미만인 경우 해당 날짜) 동안 임대료는 여전히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단계들을 따르면 위약금 없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귀하 및/또는 가족 구성원이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법원이 임대인에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명령하거나, 임대인이 법에 따라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